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심상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397 발의연월일: 2021. 7. 8.

발 의 자:심상정·강은미·류호정

배진교・양정숙・오영환

이용우 • 이은주 • 임종성

장혜영 · 정성호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시의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.

현행법 규정이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「도시개발법」 등 타법에 따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,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상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여전히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·공유재산의 매각·양도 제한규 정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하고,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 한 변경 사항을 국가시범지구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도시재생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시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3항, 제56조제7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3항 중 "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"을 "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·공유재산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"으로 한다.

제5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은 제6항의 경미한 사항을 따르고,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, 지방위원회 심의, 공청회,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30조(국유재산 · 공유재산 등의 | 제30조(국유재산 · 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) ①·② (생 략) 처분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③ ------국유재산・공유재산은 도시재 -----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 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 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・공 유재산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 거나 양도할 수 없다. 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---. ④ ~ ⑨ (생 략) ④ ~ ⑨ (현행과 같음) 제56조(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) 제56조(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) ① ~ ⑥ (생 략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시 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 항은 제6항의 경미한 사항을 따르고,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. 지방위원회 심의. 공청회.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